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02 2020. 4. 29.(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0년 4월 13일

다. 회부일자: 2020년 4월 16일

라. 상정일자: 2020년 4월 23일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O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감사관 유수남)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청(2019. 8.)
 - 추진배경(문제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 단기로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등 신고에 제한을 초래

- 개선요청: 국민의 신고 활성화,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15년으로 설정
- 부조리행위 신고기한*이「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와 중대 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공소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어 현재 조례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폐지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 보상금 지급 신고기한(現 조례):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 일반 부조리: 3년 /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금품,향응 등): 5년 ***「형법」상 뇌물죄: 7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액 3천만원 이상: 7~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2020.1.)
 - 부조리신고 종결사유 및 신고자(협조자 포함) 신변보호 조치 마련

나. 주요내용

- O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가 공무원 등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근거 법률을 명시(안 제2조제1호나목)
 - 「사립학교법」제4조에 따른 →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 공무원 등에게 알선·청탁을 받는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교육공무 직원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다목, 별표 1)
 - 다른 공무원의 → 다른 공무원 등의
- 부조리행위 신고보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조리행위 신고 기한 조문 삭제(안 제4조)

-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 삭제
- 부조리신고에 대한 종결사유가 법에 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규정과 동일하게 수정(안 제6조제3항)
 -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신설]
- O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 마련(안 제7조제4항)
 -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 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 공무원 등의 징계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권한으로 교육감이 공무원 등(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교육공무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으므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감경(면제 포함) 요청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보완함(안 제7조의2제1항)
 - 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교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면제 포함)을 요 청할 수 있다.

- O 일부 미비사항(맞춤법)을 정비하여 조문 수정(안 제14조제3항)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 O 별표의 제목을 조례 제명에 맞추어 변경하고, 부조리 신고유형 및 보상금액 추가하여 부조리행위에 대한 보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1)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신설)
 -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 이내(신설)
 - ·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3백만 원 이내(신설)
 - 신고금액의 지급기준 → 보상금액의 지급기준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의 지도감 독을 받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3호다목에서 부조 리행위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관계자,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까지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 에서는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부조리신고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였음.

-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신고자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교육 감이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사립학교법」제4조"를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공무원의"를 "공무원 등의"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4항) 중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2"를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한다.
 - 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면제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	금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 탁행위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 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 으로 기여한 경우	·3천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 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 여한 경우	∙3백만원 이내

2. 보상금액의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 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1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초·중등교육법」제6조	나
및 「사립학교법」제4조에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3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나.(생 략)	가.·나.(현행과 같음)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다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u>공무</u>
<u>공무원의</u> 공정한 직무수행	<u>원 등의</u>
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	<u><삭 제></u>
반기 위하 시고 기하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생 략)

<신 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③ (생 략)

<신 설>

④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 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은 제1항부 터 제3항까지 및 제7조의2의 규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②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책임관은 신고사항이「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 나 종결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 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 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 다.

<u>(5)</u>	 	 	

사람은(이하 "협조자"라 한 다)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 정을 준용하다.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교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 교 육감은 공무원 등이 신고와 관 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 (생 략)
 -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 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3 호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 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별표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별표 1] 부조리신고 -----기준(제13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공무원 등이 직 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 거나 향응을 제 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 위를 이용하여	·추장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7조의2	밎	제8조	

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 감경(면제 포함)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 ② 제14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별지</u>	제3호	서
<u>식</u>			

1. ~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부당한 이득을 얻	사항에 대하여	여는 추징 또는	
거나 충청북도교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u>육청</u> 의 재정에	단, 사후 추	징 또는 환수가	
손해를 끼친행위	완성되면 20퍼선	트에취재	
공무원 등이 자기	·알선·청탁의	·금품 수수액, 개	
또는 타인의 이익	대가인 금품	인별 향응 수수	
을 위하여 다른	향응 수수액	액의 10배 이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일산 청탁행위	·알선·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신설)	(신설)	(신설)	
(진실)	(신설)	(신설)	

<u>교육청의</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공무원 등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u>구</u> 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0.519101 +1-11
그 밖에 교육청의	<u> 청렴도 향상에</u>	· <u>3천만원 이내</u>
	획기적으로 기	
<u>청렴도를 훼손한</u>	여한 경우	
<u>부조리행위</u>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3백만원 이내
	청렴도 향상에	<u> </u>
	기여한 경우	

2.	<u>신고금액의</u>	결정기준	등
----	--------------	------	---

- (생략)
- (생략)
- (생략)

2. <u>보상금액의</u>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 제4조(관할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91. 3. 8., 1995. 12. 29., 1997. 1. 13., 1999. 8. 31., 2016. 5. 29.〉
 -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 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 ② 삭제 〈1991. 3. 8.〉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1972. 12. 28., 1977. 12. 31., 1981. 2. 28., 1986. 5. 9., 1990. 4. 7., 1990. 12. 27., 1997. 1. 13., 1999. 8. 31., 2001. 1. 29., 2007. 10. 17., 2008. 2. 29., 2013. 3. 23.〉
 -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大學敎育機關"이라 한다)
 -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
 - 3.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와 기타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 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 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 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

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국민 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